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고영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001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8. 18.

발의자 : 고영인 · 전재수 · 권칠승
맹성규 · 인재근 · 김경만
서영석 · 윤미향 · 박영순
박정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사자로부터의 의사상자 인정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5년간 자치단체장의 인정신청 건수는 2013년 0건, 2014년 2건, 2015년 6건, 2016년 1건, 2017년 5월 기준 1건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짐.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크며,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.

이에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의 절차상의 접근성을 확

보하고자 함.

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상자 인정 후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 고 있으나, 의사상자 심사 기간이 길게는 수개월 소요되는 경우가 있 어 의사상자나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함. 실제로 최근 의사상 자가 병원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따라서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5조제3항 및 제11조의2).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”으로, “시·도지사를”을 “시·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을”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의료급여 지원의 특례)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의사상자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의 인정 전에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의료급여에 든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지방행정재판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급여 지원절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인정신청 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<u>< 신 설></u></p>	<p>제5조(인정신청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시·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을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1조의2(의료급여 지원의 특례)</u></p> <p>① <u>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의사상자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해당 구조행위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의 인정 전에 해당 당사자에 대하여 의료</u></p>

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
항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은 자
가 의사상자로 인정받지 아니
한 경우 해당 의료급여에 든
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
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
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
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
한 때에는 「지방행정재·부
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에 따라 징수한다.